

창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56404 판결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임종규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군

변 론 종 결 2021. 5. 20.

판 결 선 고 2021. 7. 8.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2523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통영시 D 답 65㎡, E 전 2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2. 18. 접수 제3677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F 대 48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2. 18. 접수 제36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통영시 리” 부분을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원고는” 부분 앞에 “원고의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계획한 도시계획선에 1차 계약 당시 예상한 면적보다 더 많은 피고 B의 소유 토지가 도로부지 및 법면부지로 추가 편입되었다. 이에”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같은 리” 부분을 각 삭제한다.

라.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가 사업부지에 18㎡의 토지가 추가 편입된다고 속아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지역에 있는 이 사건 교환토지 면적 합계 570㎡를 교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득관, 판사 서민아, 판사 석동우